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72

발의연월일: 2025. 2. 19.

발 의 자:이춘석・이학영・안호영

정준호 • 윤준병 • 박희승

이연희 • 이원택 • 윤종군

신영대 · 임미애 · 김윤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류충돌은 국내 공항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조류충돌은 이동하는 새의 특성상 단순히 공항 내 관리만으로 한계가 있어 공항 밖의 서식지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류에 대한 관리는 공항별로 지리적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조류특성 차이로 인해 공항별 맞춤형 관리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공항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조류충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4(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①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공항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 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절차·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6조의4(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①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
	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공
	<u>항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u>
	경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와 조
	류의 충돌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u>•절차•시기 등 필요한 사항</u>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